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335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형일, 박미혜, 임수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22.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C에게 32,000,000원을 이자 연 7.1%로 정해 대여하였는데, 2022. 7. 29. 기준 대여원리금 등은 50,301,602원에 이른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1. 1. 30.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E 등 3인은 2022. 5. 1.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은 상속을 포기하고, 그 2/3지분은 피고가, 1/3지분은 E이 각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6. 15.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라 그 중 2/3지분은 피고 앞으로, 1/3지분은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됨과 동시에 F에게 138,000,000원에 매도되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8. 21.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G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2. 6. 15.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138,000,000원 중 84,000,000원으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1/3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자신의 상속지분 1/3지분을 초과하여 2/3지분을

소유하도록 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나, C의 법정상속분은 1/3에 불과하므로, 위 부분을 초과한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 부분에 관한 취소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아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이루어진 후 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1/3지분의 가액 46,000,000원(= 138,000,000원 × 1/3)에서 위 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8,000,000원(= 84,000,000원 × 1/3)을 공제한 잔액 18,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로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54,000,00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피상속인의 장례비 등 12,705,000원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중개비용 등 3,705,250원을 공제한 37,589,750원에 C의 상속지분 1/3로 곱하여 산정한 12,529,916원을 다시 원고의 채권액 50,301,602원과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액 24,684,400원으로 안분배당한 8,405,233원이므로, 피고의 안분배당액 4,124,683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 장례식에는 부의금이 들어오게 마련이고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중개비용 등은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던 권리의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이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명주소] 부산 동래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56.0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391.6㎡

(대지권의 종류 및 비율)

1 소유권대지권 39160분의 3630

-이상-

